

# 제1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

---

2022. 6. 22.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6월 22일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고 승 범 위 원 장

김 소 영 부위원장

박 정 훈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이 복 현 위 원

김 태 현 위 원

김 용 진 위 원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2년도 제2차 임시, 제1차 서면, 제11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2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2022년도 제2차 임시, 제1차 서면, 제11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2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71호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법률자문위원 수 확대, 법률자문위원 이외의 전문가에 대한 지문요청 근거 신설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72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분담과 관련한 기존의 절차를 명확화 하고,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를 추가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73호 『(주)KB금융지주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제174호 『(주)KB국민은행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제175호 『농협금융지주(주)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제176호 『농협은행(주)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제177호 『(주)신한금융지주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제178호 『(주)신한은행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제179호 『(주)우리금융지주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제180호 『(주)우리은행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제181호 『(주)하나금융지주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제182호 『(주)하나은행 부실정리계획 승인안』 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10개 지주·은행)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2022년 제출)을 승인하는 내용

○ (위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심의위원회 주관위원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음.

- (위원) 금융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 운영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법이 개정되어 작년 6월부터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RRP, Recovery and Resolution Plan)이 시행이 되었음. 그래서 작년에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10개가 지정되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심의위원회를 운영했음.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결성되었음. 그래서 10개의 SIFI가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은 1월부터 3월까지, 예보에서 작성한 부실정리계획은 4월에서 6월까지 각각 2개월간 심의했음. 자체정상화계획은 이미 3월30일 금융위에서 승인을 받았고 부실정리계획은 오늘 상정되는 것임. 부실정리계획은 방금 전에 보고자가 보고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매우 심각한 위기를 상정해 놓고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스템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정리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골자임.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SIFI 지정하고 올해가 이 일련의 절차들이 시행된 첫 해인데 그렇다 보니까 자료를 작성한 금융회사들 그리고 자체정상화계획 심의평가에 참여했던 금감원, 예보, 심의위원들 모두 처음 하는 것으로써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었음. 그렇지만 올해를 시발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안착 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함. 자체정상화계획도 그렇지만 부실정리계획 심의 결과 대체로 관련법률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음. 그렇지만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보고받는 과정에서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전달했고 그것은 각 금융회사와 예보에도 전달이 되었음. 그래서 이것은 내년 자체정

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예보 측에서는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외국제도와 저희가 가장 다른 것이 채권자 손실부담(Bail-in)제도가 도입이 안 되어 있음. 그래서 자체정상화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자체자금조달에 대한 채권자 손실부담(Bail-in)이 없다 보니까 모든 금융기관, SIFI들의 자체정상화계획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림. 그렇다 보니까 국제 기준과도 정합성에서는 약간 차이가 남. 그래서 해외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가 많이 되었는데 향후에도 이것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림. 올해는 이것이 별개로 진행되었는데, 내년에는 금융기관이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금융회사와 금감원, 예보 그리고 저희 심의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좀 더 심화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음.

- (위원) ○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를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사실 이번 부실정리계획이 예보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비용원칙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부실정리계획이나 자체정상화계획을 만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것이 보다 중요한 목표이므로 금융정책당국인 금융위원회의 시각이 더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번에 전체가 다 모여서 하신다면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방침과 방향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소위원회에서 하셨는데 오늘은 그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릴.

- (위원) 중요한 말씀임.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원) 저희 직원들과 RRP를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것을 만들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RRP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는 정리 부분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생각한 분들을 모시고 같이 작성을 했음. 그런데 지나서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희가 만든 것의 기본적인 핵심은 뼈대를 만들자는 것이었고, 즉 고속도로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살을 붙이는 것은 쉬운 것이니까 그런 틀을 잘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음. 여기 보시면 부실정리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제시될 수 있는 사항이고,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임. 여러 가지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가 내년에 작성을 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음. 또한 법적·제도적 한계도 일부 있음. 적기시정조치, 부실정리 기관을 정리하는 것이 있어서, 현재는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 가능하고 사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됨.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소비용의 원칙이라는 것이 정책적인 판단을 한다면 사후적인 처리에 있어서 예보가 예보적 시각으로 최소비용을 달성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정책당국에서 선제적 자금지원을 하게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어야 실질적·정책적인 의미에서의 최소비용 원칙이 달성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저희가 이

RRP제도를 만들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음. 첫 번째, 가교지주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예보가 가교지주를 설립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를 경영정상화 시키려면 금융지주회사와 MOU를 체결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야 됨.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법적근거가 없으면 앞으로 그 계획 자체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그 다음에 금융지주회사 내의 비부보자회사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검사라든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 부분도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실제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함. 채권자 손실부담(Bail-in)제도가 빠져 있는 상황임. 채권자 손실부담(Bail-in)제도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려면 또 다른 방식의 정상화계획을 생각해야 할 필요도 있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지주회사 정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적으로 정상화추진 단계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사후적으로 부실이 진행된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와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됨. 예를 들면, 우리가 지주를 부실정리하고 정상화계획을 수립하는데 현행 예금보험제도상 지주에 대한 예보료 부과체계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우리가 지주를 정리하면 그 밑의 비부보자회사들은 오히려 무임승차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됨.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라든지, 제시해 주신 보완·개선사항을

반영해 나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갖추어져야 제시해 주신 개선·보완사항이 비로소 완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말씀해주신 보완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정책당국과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예보에서 고생 많이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비용원칙에 의해서 예보에서 수립했지만 금융위 정책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금융시스템 안정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다들 동의를 하신 내용일 것입니다. 또 금융지주 관련해서 예금보험료 부과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가교지주 설립 근거가 없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 요즘 금융시장 상황이 많이 불안한 시점인데 적절한 계획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체정상화계획도 만들고 이렇게 예보에서 전체적인 부실정리계획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미리 대응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예보, 한은도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속 논의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83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위원)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실적공시는 시행령이나 고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 (보고자) 은행과 보험, 여전, 저축은행의 실적공시를 하도록 시행령과 규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 4개 업권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고 올 상반기에 6월 말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실적비교 공시를 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서 8월에 공시가 됨. 그다음에 신탁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정화 되어서 요구권을 먼저 신설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단계임.

○ (위원) 상호금융업권은 아직 실적공시에 관련된 규정은 없는 것인지? 별도로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 (보고자) 아직 없음. 별도로 개정해야함.

○ (위원) 우리는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도를 도입했는데, 동 고시안에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신탁은 지금 처음 도입을 하지만 3년 전에 도입한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서 몇 건 받아들였다는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어떠한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들이 정말 정당한 것이었는지가 중요함. 예를 들어 고객이 소득이 500만 원이 올라서 금리인하를 요구했는데 은행에서 안 받아줬으면 700만 원 오르면 받아주느냐, 1,000만 원이 오르면 받아주느냐? 하는 것들이 깜깜이임. 물론 은행들의 영업비밀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감독당국에서 그래도 3년이 지났으니까 불수용 사유의 사례나 유형을 적절히 조사해서 그것들이 정말로 소비자를 위해서 운영이 되었는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살피고 이를 고쳐야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음. 앞으로도 계속 상호금융이든 다른 업권에도 도입·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제 3년쯤 지났으니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정 개정이 필요하면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임.

- (보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며, 사실 은행에서 맨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을 하고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이렇게 쪽 같이 도입을 했음. 그런데 여기에서 규정만 보다보면 소극적 요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상위에 있는 시행령을 보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요건에 대해서 먼저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취업, 승진, 재산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과 같은 신용상태가 개선이 일어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고, 법인·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게 취업, 승진, 재산증가 또는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임. 이렇게 적극적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소극

적 요건은 하위 규정에 위임되어 있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얻을 때 최저금리로 받기 때문에 신용등급 1~2등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구별이 안 됨. 그래서 개인의 신용상태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금리상 이익을 못 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담보대출이라든지 대출 시 신용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신용상태의 개선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요건과 소극적인 요건을 시행령과 규정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임.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도가 더 잘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저희도 적극 동의함. 작년 10월에 은행과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음. 맨 처음에 대출계약을 할 때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이 있으면 알려주고 그다음에 연 2회 SMS나 팩스를 통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음.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인하요구의 요건 같은 경우에 업권별로 각자 다 다를 수 있음. 저희가 어떨 때 금리인하를 요구하라는 것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금융기관별로 내규에 정형화해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하는 취지로 저희가 개선했음. 그리고 홈페이지 등에도 그런 것들을 계속 홍보하게 하고 있음. 그다음에 비교공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비교공시의 대상이나 집계방법이 금융회사별로 다 달랐음. 전화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를 했는데 잘못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중복요구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요구를 하든지 간에 중복요구까지 포함해서 모수로 잡고 분자를 승인건수를 잡아서 집계하도록 하는 등 저희가 여러가지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 결과를 산업국에서 다시 한 번 보겠음.

- (위원) 우리가 착오송금 제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 착오송금 100개가 왔는데 51개는 우리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오고 49개는 대상이 되는 것이 왔다고 가정하면,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 즉, 보이스포싱이나 사기계좌 이런 것은 우리한테 와도 해줄 수가 없는 것인데, 금리인하요구권도 마찬가지로는 것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통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취업을 했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다 금리인하가 되는 줄 앓. 그렇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시행한 지 3년 정도 됐으니까 조사를 해서 그것이 수용이 되면 그런 사례는 소비자한테 알려줘야 될 것이고 수용이 되지 않는데 임의적으로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행한테 계도를 해서 바뀌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한 번쯤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임.
- (위원) 업권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한 3년 됐고 그동안에도 많이 검토 했지만 전반적인 검토도 해보고, 실적 관련해서 나중에 발표도 하겠지만 일단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홍보를 더 잘해서, 지금이 사실 금리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홍보가 잘 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금리인하요구권이 어떻게 보면 잘 정착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음.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보고자) 제가 잠깐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는 2015년 12월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미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금융기관에서 안착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안내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내규를 바꿔서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 또는 거절시, 사유 같은 것을 서면으로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불수용 시 거절 사유가 명확하게 통지되는지?
- (보고자) 작년에 금감원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발견되었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심사요건이 다 상이하니까, 그리고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결과 통지 부적정 사례와 관련해서 통지서 서식에 불수용 사유를 아예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절통지를 하면서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문구로 거절한다거나 비대면 신청 건에 대해서 그냥 금리인하불가하다, 세부내용은 영업점에 문의해라 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은행을 기준으로 안내문구를 정형화하고 구체적으로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금까지 제도개선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84호 『(주)키움에스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IT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등을 위반한 (주)키움에스저축은행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85호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사전지정운용제도, 소위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한 퇴직급여법 개정안이 7월12일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86호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주)타임폴리오캐피탈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87호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산업은행 직원 36명 및 퇴직자 1명에 대하여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의무  
위반으로 주의 및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 (위원) 이 건은 굉장히 경미한 건들이 있어서 안전검토  
소위원회에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여러 항목을  
써야 하는데 한 가지를 누락하고 그런 것이라 제가 봐도 너무  
경미한 것 같음.

○ (위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도 참작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은행의 경우도 비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안전검토  
소위원회에서 수정하신 내용이 금감원 입장에서도 수용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위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7호 안전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전검토  
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금융실명법상  
기록·관리의무 1건을 위반한 경우 단순 경과실로 위반행위  
정도가 경미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인 상황을 고려시 원안의  
위반건수가 1건인 단순과실에 대해서도 신분제재(주의)를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기록·관리의무를 1건 위반한 20명에 대하여 신분제재(주의)를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함.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188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보험업감독규정상 금리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실질감소분인 LAT 잉여액을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내용

○ (위원) 혹시 금리상승이 몇 퍼센트 되었을 때 어떤 정도의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본 적이 있는지?

○ (보고자) 회사들마다 듀레이션이 다르고 그 듀레이션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가령 ●●●●●●●●의 경우에는 △△△△△△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아까 말씀드린 ○○○○과 ◆◆◆◆◆◆의 경우에는 ▽▽▽▽에 영향을 많이 받음. 그런데 듀레이션에 따라서 특히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것이 지수, 함수의 형태를 띠면서 영향을 많이 받는 형태임. 이것이 지수적으로 증가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봤음. 그런데 ●●●●●●●●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채권평가손실이 조금 더 커

지고 지금 이 조치만으로는 부족해서, 또 지급여력비율(RBC)이 100%로 떨어질 수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이것을 무작정 회계기준 변경이나 감독기준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상황임. 그래서 지금 후순위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 자기자본 위주의 자본증자를 유도하기 위한 협의 중임.

- (위원) 미국이 자이언트스텝(Giant Step) 2번 가고 우리가 빅스텝(Big step) 2번 가면 자칫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드는데?
- (보고자) 금리는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일단 금리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先반영이 되어 있어서 오늘 기준으로 20년물은 한 3.6%, 10년물은 한 3.7% 되어서 그것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경우에는 연말에 한 3.5%까지 한다고 하니까 先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국내도 한국은행에서도 많이 올리고 하면 오버슈팅(Overshooting)의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장중에는 4%를 넘어가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위원) 방금 보고자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논의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 (위원) 금융위 과장님께서도 조심스럽게 4%를 뚫을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한 말씀을 주셨지만 스트레스테스트 차원으로

로는 저희 금감원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담당 과와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해 오고 있음. 아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이 바뀐 규정에 따른 효과에 더해서 지금 자체 기본자본 등의 확충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등을 적절하게 보고 해 주신다고 하니 아마 그때 논의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음. 견해에 따라서는 회계적 관점으로만 보면 과연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의 한도를 썩은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음. 어쨌든 간에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손보사들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인 것도 맞음. 다만 이것이 이미 3~4월 기준으로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고, 금번 개정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혜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완화해 준 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4%를 뚫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금융위와 금감원 담당부서에서 잘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람. 혹여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적기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전향적으로 보는 것이 금융시장 전체에 좋을 것 같음. 한 쪽의 시그널(signal)로써는 오히려 바람직한 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음.

- (보고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저희가 검토할 때 반영을 고려하겠음. 그리고 향후 3사(社) 처리방안하고 자본확충방안을 보고 드릴 때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음.
  
- (위원) 알겠음.

- (위원) 저도 이번 기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 처리라는 것은 실질을 실질로 기재해야 그것이 정당한 것인데 어떤 회사는 매도가능증권을 100%로 하고 어떤 보험사는 만기보유를 100%로 해서 그것을 공시한다는 것이 맞는 것임.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을 100%로 인정해 주고, 그런데 그 사람은 매도를 하지도 않고 만기보유할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회계처리, 아마 금리 낮아진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독당국에서 용인해 준다는 것도, 과거에는 그것이 적기시정조치아든 자본확충이든 이런 측면에서 어차피 적기시정조치 안 가고 회계적으로나 그런 것으로 넘어가자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은 실질에 맞게 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함. 실질이 만약 그렇다고 하면 매도가능증권이 30%를 못 넘게 한다든지, 만기보유를 100% 하는 것이야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자기들이 만기보유하려고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것은 모르겠지만 매도가능을 100%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감독당국이 오히려 그것을 용인해 줌으로써 비교가능성도 흐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변동이 생기면 그것이 또 독으로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넘을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을 마련해 주어야 될 것 같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회사가 어려울 때 후순위채를 많이 발행하게 하는데 결국 후순위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금리가 2~3배 높으니까 사실 수익을 떨어뜨리는 행위임. 수익을 떨어뜨리는 행위인데 그 후순위채의 금리상승분을 만약에 소비자가 부담하고 계약자가 부담한다면 그것은 주주가 부담해야 될 것을 소비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니까 보험회사한테 보전을

해 주어서는 안 됨. 그래서 후순위채의 그런 금리부담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잘 보셔서, 주주에게 가야 될 부분인데 보험료를 인상시켜서 그것을 계약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못하게 해야 되고, 후순위채 발행을 하는 것도 과거에는 많이 인정을 해 주다가 우리가 기본자본의 비율로 자꾸 떠안아 가는데 어쨌든 간에 주주한테 가는 것이 맞음. 정 안 되면 제3자 배정을 하고 제3자 배정을 해도 안 되면 후순위채로 가야 될 것인데 증자는 생각도 안 하고 제3자 배정도 생각 안 하면서 일단 후순위채 발행해서 위기를 넘기겠다, 그런데 금리 많이 받는 것을 나중에 계약자에게 손실률이든 어떤 것으로든 넘기겠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부 부작용에 대한 원칙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냐? 해결 방법이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되고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음. 부실화되기 전에 그 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예금 대지급이 일어나지 않고 계약이전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실화된 금융회사에 대지급해 주면서 돈 넣고 이전하는 방식보다는 살아있을 때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돈도 적게 들고 할 수 있음. 그런 사전적 자금지원제도를 빨리 입법화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임.

- (위원)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 분류하고 하는 것도 보험사들이 자기들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 (위원) 그러함.

○ (위원) 사실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점도표를 보니까 금년에 3.4%, 아까 3.5%를 얘기를 했는데 내년엔 3.8%, 내후년에 3.4% 그 정도를 예측했음. 그런데 연준(Fed)이 계속 그것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음. 예측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의 대응을 잘 해야 되고 어느 상황으로 갈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하면서 잘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함. 아까 말씀하신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것도 유상증자 위주로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하여튼 이후에도 상황을 잘 보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89호 『라이나생명(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주주 요건을 모두 충족한 처브리미티드의 라이나생명(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35호 『보험업 허가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 제36호 『‘22년 1분기 (주)한국씨티은행의 은행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보고』, 제37호 『‘21년 6월말 기준 (주)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 제38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금융위원회 제12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2분 폐회)